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87 발의연월일: 2022. 8. 24.

발 의 자:임오경·박상혁·이병훈

양기대 • 고용진 • 김윤덕

김병욱 · 윤준병 · 이상헌

김용민 · 유정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 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 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4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 |
|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 |
|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 | |
| 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 | |
|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 | |
| 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 | |
| 할 수 있다.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
| | 내에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
| |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
| |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학교 신 |
| | 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